

창업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박 상 봉*

〈목 차〉

- | | |
|----------------------------|---------------------|
| I. 서론 | V. 창업중소기업 조세정책의 개선안 |
| II. 중소기업 창업조세지원의 개요 | VI. 결론 |
| III. 우리 나라와 외국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 참고문헌 |
| IV.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Abstract |

I. 서 론

올해로 정부의 실질적인 창업중소기업지원정책은 16년을 맞이한다. 종전의 중소기업의 정책은 기존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창업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미래지향적이 가미되고 조세감면이나 조세절차의 간소화, 투자·금융지원 및 경영자문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이루어져 창업촉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자본, 인력, 정보 등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에 따른 장애요인을 많이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148132최근에 중소기업의 창업이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업의 창업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잇따른 부도와 불안한 금융시장과 불투명한 투자전망 등 경제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창업자들의 창업의욕을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

* 동의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우리 나라는 헌법 제23조를 비롯하여 중소기업기본법 등 중소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16개 법률체계를 이미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창업지원체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바, 본 연구는 창업중소기업 지원제도 중 조세지원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II. 중소기업창업지원의 개요

1. 창업조세지원의 의의

창업중소기업이 국민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역할에 비하여 자본, 인력, 정보, 규모등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금융지원이나 조세지원을 통하여 그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창업조세지원이란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창업인의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다.

조세감면방법으로는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세공제 등과 같이 소득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완전면세방법과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과 같은 일시적인 감면이나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감면세액이 부과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조세부담을 유예 또는 경감시켜주는 과세이연방법 등이 있다. 창업지원세제의 특징은 첫째, 그 지원대상이 정부가 정한 수도권에서 기술집약형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과 농어촌지역에 한정하는 등 대상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둘째, 조세제도가 금융지원처럼 창업과정 또는 기업성장단계에 부응한 동태적 성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창업시점이 중요시된다. 셋째, 창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창업투자회사, 창업상담회사, 경영컨설팅 등 창업지원기관과 배타조직 등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넷째, 창업기업의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등 조직형태에 따라 제도적용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다.

2. 창업중소기업의 현황

중소기업청이 2000년 12월에 8대도시(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광주, 대

전, 수원) 소재 업종별 법인의 창업 동향을 조사를 분석한 결과 12월 중 신설법인수는 2,910개로서 1999년 동월 대비 6.1% 감소되었으나, 연간 신설법인수(총계)는 41,460개로서 1999년 대비 38.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 창업법인 동향

(단위 : %, 개)

구 분	1999. 12	1999	2000. 9	2000. 10	2000. 11	2000.12	2000
신설법인수(개)	3,099	29,976	2,630	2,990	2,826	2,910	41,460
전원 대비 증감률(%)	17.9	-	△30.0	13.7	△5.5	3.0	-
1999년동월(기) 대비증감률(%)	49.1	55.5	8.3	9.8	7.5	△6.1	98.9

<표 II-2> 업종별 신설법인 변화추이

(단위 :%,개)

구 분	1999. 12		1999		2000. 9		2000. 10		2000. 11		2000. 12		2000	
	법인 수	비중	법인 수	비중	법인 수	비중	법인 수	비중	법인 수	비중	법인 수	비중	법인 수	비중
음식료품	33	1.1	490	1.6	37	1.4	39	1.3	35	1.2	34	1.2	459	1.1
가죽·가방	12	0.4	126	0.4	7	0.3	9	0.3	10	0.4	11	0.4	133	0.3
생활용품	32	1.0	465	1.6	32	1.2	32	1.1	34	1.2	37	1.3	455	1.1
가구및종이업	27	0.9	256	0.9	14	0.5	17	0.6	16	0.6	26	0.9	272	0.7
섬유(의류 등)	121	3.9	1400	4.7	102	3.9	127	4.2	123	4.4	102	3.5	1510	3.6
제고무, 화학제품	66	2.1	601	2.0	47	1.8	46	1.5	44	1.6	66	2.3	703	1.7
비금속광물	9	0.3	118	0.4	12	0.5	20	0.7	15	0.5	11	0.4	150	0.4
전기전자,통신기기	193	6.2	1897	6.3	162	6.2	158	5.3	152	5.4	159	5.5	2482	6.0
의료 및 광학기기	18	0.6	163	0.5	23	0.9	51	1.7	54	1.9	24	0.8	394	1.0
기계,금속업	124	4.0	1295	4.3	110	4.2	126	4.2	121	4.3	113	3.9	1512	3.6
자동차,선박부품	32	1.0	287	1.0	17	0.6	17	0.6	17	0.6	31	1.1	265	0.6
출판,인쇄업	49	1.6	432	1.4	51	1.9	52	1.7	51	1.8	42	1.4	689	1.7
기타제조업	59	1.9	584	1.9	63	2.4	78	2.6	58	2.1	78	2.7	975	2.4
소 계	775	25.0	8114	27.1	677	25.7	772	25.8	730	25.8	734	25.2	9999	24.1

서비스업	S/W정보통신업	430	13.9	2668	8.9	387	14.7	446	14.9	420	14.9	457	15.7	7343	17.7
	부동산, 장비임대	145	4.7	1494	5.0	126	4.8	146	4.9	146	5.2	162	5.6	2161	5.2
	기타서비스업	336	10.8	3866	12.9	451	17.1	472	15.8	432	15.3	437	15.0	6132	14.8
	소 계	911	29.4	8028	26.8	964	36.7	1064	35.6	998	35.3	1056	36.3	15636	37.7
도소매업 및 자동차 판매수리업	도소매업(유통)	560	18.1	4613	15.4	359	13.7	461	15.4	418	14.8	439	15.1	5756	13.9
	자동차판매수리업	22	0.7	211	0.7	13	0.5	20	0.7	19	0.7	11	0.4	269	0.6
	무역업	237	7.6	2219	7.4	175	6.7	195	6.5	170	6.0	220	7.6	2762	6.7
	소 계	819	26.4	7043	23.5	547	20.8	676	22.6	607	21.5	670	23.0	8787	21.2
건설업	건축, 토목, 설비, 전기공사 등	397	12.8	4883	16.3	312	8.6	341	11.4	330	9.1	293	10.1	5007	12.1
운수여행업	육상, 해상, 항공운송관련업	139	4.5	1401	4.7	84	3.2	92	3.1	98	3.5	110	3.8	1355	3.3
숙박,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27	0.9	226	0.8	12	0.5	18	0.6	21	0.7	18	0.6	244	0.6
전기, 가스업	가스, 온수, 증기 공급업	1	0.0	62	0.2	6	0.2	4	0.1	10	0.4	6	0.2	80	0.2
광업	석탄, 금속, 채석업 등	14	0.5	84	0.3	6	0.2	5	0.1	6	0.2	6	0.2	87	0.2
기타	농·임·어·수렵업	16	0.5	135	0.5	22	0.8	18	0.6	26	0.9	17	0.6	265	0.6
계		3099	100	29976	100	2630	100	2990	100	2826	100	2910	100	41460	100

<표Ⅱ-2>에 의하면 12월 중 신설법인수는 전월 대비 운수여행업이 12.2% 도·소매업 10.4%, 서비스업 5.8% 등 대부분의 업종이 증가되고 건설업은 11.2% 감소하였으며, 1999년 동월 대비 서비스업이 15.9% 증가된 것을 제외하

고 전업종이 감소하였다.

<표Ⅱ-3>에 의하면 2000년도 신설법인수(총계)의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 37.7%, 제조업 24.1%, 도·소매업 21.1% 순이며, 1999년 대비 제조업은 27.1%에서 24.1%로 낮아진 반면 서비스업은 26.8%에서 37.7%로 크게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 전년 대비 신설법인 비중

(단위 : %, 개)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운수여행업	기타	계
1999	27.1 (8,114)	26.8 (8,028)	23.5 (7,043)	16.3 (4,883)	4.7 (1,401)	1.6 (507)	100 (29,976)
2000	24.1 (9,999)	37.7 (15,636)	21.2 (8,787)	12.1 (5,007)	3.4 (1,355)	1.5 (676)	100 (41,460)

* () 내는 신설법인수

Ⅲ. 한국·외국의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1. 우리 나라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은 중소기업기본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외부기관의 확인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세법(조세특례제한법)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규정을 준용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1.1 법 적용대상은 영리사업자로 한정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개인사업자, 영리 특별법인 등이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 단체도 중소기업으로 본다.¹⁾

1) 조세특례법시행령 제2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

1.2 업종의 구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업종에 해당되어야 한다. 업종 분류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즉, 하나의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둘 이상의 사업을 겸업시 주 업종이 정해지면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모든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고, 당해 기업 전체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의 범위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한다.

1.3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중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단,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요원, 대표이사, 법인등기부상의 이사와 감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등에 기재된 근로자 수를 참고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때 월중 퇴사, 입사, 재입사 구분없이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1.4 자본금 산정

자본금기준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에만 적용되며 일단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자본금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자본금기준은 기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적용된다. ①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자본금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작성된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자본잉여금 합한 금액), ②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자본금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의 자본금, ③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자본금기준은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또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1.5 매출액의 산정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 상시근로자수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매출액을 초과하여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상시근로자수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매출액을 초과하여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상시근로자수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만 매출액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매출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직전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은 직전사업연도 12개월의 매출액 ② 창업 또는 합병한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이 되지 못한 기업은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③ 창업 또는 합병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은 창업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월 전월까지의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④ 산정일이 창업한 달 또는 합병한 달에 속하거나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월에 미달하는 경우는 창업 또는 합병일부터 산정일까지 매일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일수로 나누어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6 유예기간의 부여

유예기간이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규모의 확대나 중소기업기준의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중소기업으로 지원하는 기간을 말한다.

유예기간은 다음과 같이 2종류로 구분한다. 첫째, 기업의 규모확대 등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 연도 다음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대기업)과 합병하여 중소기업을 초과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④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되는 경우, 둘째, 경과조치에 의한 유예기간으로 개정된 중소기업기준에 의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지금까지 설명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기준을 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기준과 비교하여 요약해 보면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중소기업기본법과 세법상 중소기업비교

구 분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비 고
① 업종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1항 열거된 업종에 한함	제외된 업종 : 전기, 가스, 수도사업, 금융업 및 보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기타서비스업
②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시행령 별표의 업종별로 정한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 이상 충족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규모기준은 택일 기준
③ 독립성기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제외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④ 졸업제도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초과시 중소기업에서 제외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자기자본 10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중 하나라도 초과시 제외	①, ②, ③, ④ 요건 모두 충족시 중소기업에 해당됨
⑤ 유예제도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 그 후는 매년 판단	
⑥ 소기업특례 규정	중소기업 주된 사업이 - 광업, 제조, 건설, 운수 : 50인 미만 - 이외 업종 : 10인 미만	중소기업 주된 사업이 - 제조 : 100인 미만 - 광업, 건설, 운수 : 50인 미만 - 기타 : 10인 미만	

자료 : 中小企業基本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中小企業基本法 施行令 別表 1, 別表2는 부록 참조

2. 외국의 중소기업 범위

2.1 미국

미국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1953년) 제3조는 중소기업이란 독립하여 소유하거나 경영되고 그 영업분야에 있어서 지배적인 아니 기업을 말한다라

고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은 종업원수와 매출액을 정의의 지표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설정기준은 ① 독립하여 소유되고, 사업분야에서 지배적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② 근로자수 및 매출액 기준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으로 정의하며, ③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또한 그 관련되는 요인을 충분히 참작한 범위 안에서 각 산업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즉 미국에서의 중소기업 범위는 중소기업법 제3조가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표 III-2> 업종별 중소기업자 범위

업종	구분	비고
제조업	중소기업의 일반적, 포괄적 정의는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of 1953) 제3조에 의해 정의되어 있고, 상세한 정의는 종업원수와 매출액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청 장관이 정함	영세기업(Very Small)은 종업원수 20인 미만
	이 규정에 기초하여 미국의 중소기업은 표준산업 분류(SIC)의 4단위 분류마다 종업원수 EH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세히 정의되어 있음. 제조업의 경우는 업종마다 500인 미만(342개 업종), 750인 미만(56개 업종), 1,000인 미만(58개 업종), 1,500인 미만(3개 업종) 등의 범위가 정해져 있음(98년 1월 현재 기준)	소기업(Small)은 종업원수 20~99인 이하 중기업은(Medium-Sized)종업원수 100~499인 이하
광업	연간매출액 350만 달러 EH는 종업원수 500인 이하	
건설업	연간매출액 700만 ~ 1,700만 달러	
도매업	종업원수 100인 이하	
소매업	연간매출액 500만 ~ 2,100만 달러	
서비스업	연간매출액 250만 ~ 2,150만 달러	

자료 : Code of Federal Regulation 's Small Business

2.1 일본

일본은 중소기업의 정의를 양적 개념으로 상시 종업원수와 자본금 규모에 의하여 일관하고 있는데 일본 중소기업법 제2조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표 III-3> 업종별 중소기업자 범위

업종	구분	비고
제조업, 기타	종업원수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3억엔 이하	소규모기업은 종업원수 20인 이하
도매업	종업원수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	소규모기업은 종업원수 5인 이하
소매업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	
서비스업	종업원수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	

자료 : 일본중소기업기본법

2.3 대만

대만에서는 중소기업발전법에서 기준을 두고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즉 회사등기를 필하고, 『중소기업 인정표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중소기업자로 보고 있는 바, 『중소기업 인정표준』에서 자본금, 고용인 또는 매출액 기준에 의거 업종별 중소기업자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표 III-3> 업종별 중소기업자 범위

업종	구분	비고
제조업, 기타	납입자본금 NT\$ 80백만 이하 혹은 고용인 200인 이하	2000년 3월 개정
광업, 토사채취업	납입자본금 NT\$ 40백만 미만	
유통, 운송서비스, 기타서비스	전년도 영업총수익 NT\$ 100백만 EH는 고용인 50인 이하	

자료 : 대만경제연구

그러나 지원결과 중소기업자의 범위초과시 지원 후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며, 지원으로 합병된 기업이 중소기업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합병 후 2년간은 중소기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2.4 EU

유럽위원회 제23총국에서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의 기준은 종업원수와 연 매출액 총자산 등으로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업종별 중소기업자 범위

업종	구분	비고
전산업	종업원수 250인 미만	중소기업정책은 유럽위원회 제23총국에서 담당 영세기업은 종업원수 0~9인, 소기업은 10~49인 이하, 중기업은 50~249인 이하임.
	연매출액 4,000만 ECU 이하	
	총자산 2,700만 ECU 이하	
	대기업의 참여자본 25% 미만 기업	

자료 : OECD, Globalisation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Vol.1 Synthesis Report, 1997.

IV.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²⁾

1986년 법률 제3831호로 공포된 중소기업진흥법은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중소기업지원법 제25조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영위하는 자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광업 및 제조업 등의 업종에 한한다. ① 농어촌지역 중소기업 창업자 및 수도권 이외 지역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자는 창업관련업의 사업에서 발생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기간개시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수도권 안에서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자는 수도권 내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5년 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한다.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2.1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³⁾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동일한 연도에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과 중복적용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세액감면에 적용은 가능하다.

2.2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한다. 단, 취득세 감면을 받은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11조의 규정이 의하여 중복지원을 배제하게 됨에 따라 외자도입법 제14조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러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사업계획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이면 모두 적용받는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⁵⁾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과 출자지분 또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5)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⁶⁾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기업구조조정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을 개인이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한다.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⁷⁾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투자액 또는 출자액의 15%를 투자 또는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2년 내에 거주자가 선택한 종합소득에서 30% 소득공제한다.⁸⁾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투융자손실준비금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신기술사업자에게 투·융자금액의 50%와 투융자금액에서 투융자손실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투융자손실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단, 준비금은 투·융자로 인한 손실과 상계하고 잔액은 4년후 일시 익금환입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7)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8) 1999. 8. 30 이전 투자분 20% 공제, 2001. 12월 이전 투자분은 30% 소득공제

9)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7. 농어촌특별세 비과세¹⁰⁾

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최저한세의 적용¹¹⁾

최저한세란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으로 결국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서식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 ① 각종 감면을 적용한 후의 세액
- ② 각종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과세표준 × 12%(일반법인의 경우 15%)

V. 창업중소기업 조세정책의 개선안

1. 취득세·등록세 감면기간 연장

현재의 세법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2001년 이후 창업한 기업은 5년 이내의 흑자를 본 기업은 24%에 불과하고 계속 5년간 적자를 본 기업은 29.5%를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적자 기업이 많은 이유는 창업자의 경영능력이 부족함과 창업한 기업은 업종의 불황에 기인한 것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업기업은 기업의 설립이후 경영의 안정이 되기까지는 고정자산의 투자에 따른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그에 따른 투자회전을 및 고정자산회전율등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창업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들어서는 기간을 일반적으로 5년에서 7년으로 보는 점을 감안할 때 당해 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 감면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을 검토해

10)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법인세 과세표준액과 세율 세분화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금액과 세율은 2단계로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은 28%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동안 법인세 세율 변동은 있었지만 과세표준액은 거의 변동은 없었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세분화함으로서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제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3. 최저한세 적용 배제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각의 산업·복지 등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에도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토록 하는 최저한세(Minimum Tax)제도를 9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의 12%이고, 개인은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 16%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최저한세율이 12%에 달함으로써 최대감면폭은 과세표준의 4%에 지나지 않게 된다.

4.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우리 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은 벤처캐피탈에 투자한 투자액의 20%를 당해 연도소득세에서 감면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에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5년간 이월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투자조합의 여건을 개선하고 개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액 일정한 비율만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1990년 중반부터 시행하고 있다.

5. 출자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투자조합자금으로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개인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이에 일반법인 조합원의 경우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에 따라 거액의 참여가 가능한 일반법인의 창업조합출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법인의 창업지원회사 참여가 활성화되어 투자재원이 원활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법인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할 것이다.

6. 투·융자손실준비금 손실 범위 확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창업자나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 또는 융자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손실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금 설정시에 그 범위를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이외에 판매액의 일정한 비율로 상환 받는 조건으로 융자한 금액 및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융자액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조건부융자에 대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지만 이와 유사한 창업투자회사는 약정투자에 대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이에 창업회사는 신기술금융회사에 비해 제약조건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함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융자손실준비금 상계손실 범위에 창업투자회사의 약정투자금액도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효과는 다른 조세지원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중소기업지원제도 활용실태와 분석”에 의하면 다른 각종 세제 효과에 비해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실시한 “2000년 창업실태 조사”에 의하면 창업지원세제를 활용한 기업은 전체의 50.2%를 나타내고 있지만 세제감면을 받지 못한 이유 중에는 ‘감면혜택이 없어서’가 2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지원세제를 통해 창업촉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내용의 개선과 조세지원 정보서비스의 중점과 함께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금융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자본, 인력, 정보, 기술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는 물론 창업환경이나 세제지원을 개선시켜 중소기업 창업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세청. www.nts.go.kr/
2. 국세청(200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안내
3. 김의효(2001), 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
4. 김진영(2001), 중소기업관련법 요해
5. 박용희외(1999), 중소기업지원제도 총람, 한국경제신문사
6. 이재웅(2002),. *Global Strategy for Small Business*, 다사랑
7. 중소기업진흥공단(2002),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세제
8. 중소기업진흥공단(2001), 2001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9. 중소기업청(2002), 2000년 법인창업실태조사
10. 전학봉외(2001), 중소기업창업과 세무·회계, 삼우사
11. 한국세무경영사(2001), 중소기업관련법규집
12. 한국세정신문사(2002), 국세편람
13. 홍문관법연구회(2001), 조세특례제한법, 홍문관
14. Biel, Andrew R(1995), 『Ten Tax Tips for the Business』, *Journal of Accountancy*, February.
15. Collins, Stephen H(1997), 『Interview Small Business Committee Chairman』, *Journal of Accountancy*, June.
16. E.Staley and R.Morse(1995), 『Modern Small Industry for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 McGraw-Hill Book.

Abstract

A Study on the Tax Support System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for Foundation

Park, Sang-bong

In this paper, it is indicated that, currently, found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is generally increasing in number, but the establishment of manufacturing companies is very slow. This is because of many factors interfering with promotion of the opening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such as endless bankruptcies of the businesses and uncertain perspective.

Therefore, it will be expected to encourage people to start business and activate establishment of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by improving tax support systems and providing tax support information services for founded companies and foundation supporting companies.